



제안된 옴니버스 변경 사항이 EU 법률에 미치는 영향

세부 주제	기존 규정	옴니버스 제안
CSRD		
CSRD의 적용 범위(기업 규모)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 직원 수 250명 이상, 2,500만 유로 이상의 대차대조표, 또는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 또한 더 낮은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 중소기업(SME)도 포함되며, 2028년까지 적용 유예(opt-out)가 가능합니다.	직원 수가 1,000명 초과이고, 매출 5,000만 유로 이상 또는 총자산 2,5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해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 중소기업(SME)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영향을 받는 기업 수는 80% 감소합니다.
이중중대성	보고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재무적 중대성과 영향 중대성 모두) 필수 요구 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CSRD 적용 대상 기업 수	5만 개 이상의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1만 개 미만의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CSRD 제3국 기업 적용 기준	기준은 매출 1억 5천만 유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매출 4억 5천만 유로로 상향되었습니다.
CSRD 가치 사슬 보고	기업은 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공급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더 이상 CSRD 비적용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발적 SME 보고 기준에 따라 연계된 중소기업(SME)에 대한 데이터 요청에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CSRD 보증	현재는 제한된 검증(limited assurance)이 요구되며, 향후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으로의 전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검증(limited assurance)은 유지되지만,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에 대한 요구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CSRD 보고 마감기한	최초 공시 및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마감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 및 3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SRS)	2023년 7월에 채택되었으며, 폭넓은 정성적 및 정량적 공시를 포함합니다.	ESRS는 간소화되고 공시 항목 수가 줄어들며, 정량적 데이터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산업별 기준	EFRAG는 산업별 공시 기준을 개발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CSRD는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을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산업별 공시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CSRD 기후 전환 계획의 일치(harmonisation)	CSRD와 CSDDD는 기후 전환 계획 및 공시에 대해 각각 별도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Omnibus 제안은 기업이 기후 전환 계획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유지됩니다. 기후 관련 공시는 여전히 ESRS에 따라 요구됩니다. CSRD 관련 기준은 여전히 EFRAG에 의해 개발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세부 주제	기존 규정	옵니버스 제안
CSDDD		
CSDDD 이행 일정	이는 2027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8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CSDDD 가치 사슬 적용 범위	직접 및 간접 공급업체를 포함한, 이른바 “활동체인”(하류 가치사슬의 일부는 제외됨)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장과 자회사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리스크가 식별되지 않는 한 직접 공급업체(1차 공급업체)만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CSDDD 부정적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	연간 모니터링은 실사 의무의 일환으로 “활동체인”에 대해 요구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의 빈도는 5년마다로 줄어들며, 필요 시 수시 평가가 수행됩니다. 그러나 기업은 조치가 계속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실사가 요구됩니다.
CSDDD 계약 해지	기업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CSDDD 민사 책임	비준수 시 기업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새로운 민사 책임 조항의 도입을 철회합니다. 그러나 기존 각 회원국의 민사 책임 관련 법률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기업은 여전히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SDDD 금융 부문 적용 범위	금융기관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CSDDD 벌금	최대 벌금은 전 세계 매출의 최소 5%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각 회원국이 벌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CSRD 기후 전환 계획의 정합성(harmonisation) 확보	CSRD와 CSDDD는 기후 전환 계획, 보고 기준,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어 일관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는 회원국이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옵니버스 제안은 CSDDD 하에서 기후 전환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여전히 기후 변화 완화와 관련된 계획된 조치와 이미 이행된 조치를 포함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공시는 여전히 ESRS에 따라 요구되며, 이는 EU 회원국 간의 조화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각국의 유연성은 제한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BAM 수입자 기준	모든 수입자에게 적용되어, 소규모 수입자도 CBAM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연간 50톤 면제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어, 전체 수입자의 90%가 CBAM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BAM 전면 시행일	이는 현재 2026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으로 연기되며,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의 연간 마감일이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됩니다.
CBAM 제품 대상 범위	이는 철, 강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수소, 전기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대되지 않지만, 2026년에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분야, 간접 배출, 가공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배출 추적 프로세스	이는 세부적인 배출량 추적을 요구합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규제 준수의 복잡성이 줄어들었습니다.